



1.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 2002-15호)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자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갑설 : 원도급회사 시공관계자(공사과장, 공사대리, 기사 등)는 안전관계자의 범위 중 관리감독자에 해당되지 않고, 하도급회사의 현장소장 및 시공관계자(공사과장, 공사대리, 기사, 반장 등)만 관리감독자로 보아 안전관계자로 본다.  
 을설 : 관리감독자의 경우 현장안전관리 조직도상에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자로써, 근로자와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공사 시공관계자를 말하므로 발주처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원도급회사 현장 공사과장 및 공사대리 등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와 원도급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하도업체(건설업 특성상 한 현장에 여러업체의 하도업체가 있음) 현장소장 및 하도업체 공사과장, 공사대리, 반장 등이 모두를 관리감독자 범위내에 있는 안전관계자로 본다.
2. 상기 1 질문에서 관리감독자 범위가 갑설이 맞다면, 산안법 제33조 1항 관련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받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대상에서 원도급회사 시공관계자(공사과장, 공사대리, 기사 등)는 정기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3. 상기 1 질문에서 관리감독자 범위가 을설이 맞다면,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서 진행중인 해외우수건설 현장 안전관리견학 관련 프로그램 해외 연수비용을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5항 안전보건교육비의 안전관계자 해외견학연수비(원도급회사 공사과장, 공사대리, 기사 및 하도급회사 현장소장, 공사과장, 공사대리, 기사, 반장 등 공사시공관계자만 해당)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2. 원재료를 취급·관리하는 자재부서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무부서에 종사하는 부장, 과장, 직반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총무부내에 안전관리과가 소속되어 있고 안전관리자가 생산부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총무부 책임자인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담당업무와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뿐이지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수방 자재 사용에 관한 질의회시집을 봤으나 다소 유동적이라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터널 현장에서 수방 자재와 같은 항목으로(장화, 우의, 모래, 마대, 삽 등) 평소 비상·위급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비상·위급이라는 개념에 하절기 구조물의 유실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외 구조물의 유실이나 작업장의 침수 등 작업자의 재해와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A

1.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2. 위 자재들이 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이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타법에 적용되는 시설 및 장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당공사 시행중 안전관리자 지정대상 공사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당공사는 수해복구공사로 총 공사금액 3,803,000,000원(도급 : 2,956,000,000원, 관급 : 847,000,000원)입니다. 이 경우 ① 안전관리자 지정 대상 공사인지 ②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을 총괄하는 현장으로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A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38억원으로 상기 기준이하로써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아니며,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며 사업주가 당해 사업(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